

CEN/CENELEC INTERNAL REGULATIONS(내규)

● 목 차 ●

개요
제1부: CEN/CENELEC 유럽규격 적합성 마크제도의 기본원칙
1 적용범위
2 CEN/CENELEC 유럽 마크
2.1 마크의 의미
2.2 마크의 소유권
2.3 유럽 마크 제도
2.4 유럽 마크 인증서
2.5 마크의 보호
2.6 마크
2.7 기타 마크들
2.8 마크 사용 유효기간
3.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 규정 및 요건
3.1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 제도의 요건
3.2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 규정
3.3 특별국가조건 또는 A-변이를 관장하는 규정
3.4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 제도의 관리
4. 제조자
4.1 신청
4.2 수수료
4.3 권리 및 의무
4.4 불만처리
4.5 이의제기 절차
5. CEN 인증위원회 및 ELSECOM
5.1 책무
5.2 CEN/CENELEC 인증 연락 위원회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각종 적합성 마크를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 마크 제도로 통합,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 제도는 우리나라의 KS마크와 성격이 비슷한 품질보증마크로 앞으로 유럽연합의 통합된 품질표시 제도로 자리할 전망이다.

이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 마크제도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1. 개요

자신의 제품이 CEN 및 CENELEC에서 채택한 유럽규격에 적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업 파트너들은 시장의 요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 공급자의 적합성선언
- 국가적 인증제도 또는 표시제도
- 가능한 경우, 지역 또는 국제적 부합성평가

그들은 또한 CEN/CENELEC의 유럽규격에 대한 적합성 마크제도(이하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라 칭함)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제삼자 제품인증에 대한 유럽의 조화된 서비스 업무가 CEN/CENELEC의 관리하에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이 마크는 1992년 6월 18일 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제정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각종 유럽 마크들을 도입하는 것은 CEN/CENELEC에 의해 저지될 것이다.

이 조화된 서비스업무는 CEN 인증위원회와 ELSECOM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되는데 이 ELSECOM은 전자기술 분야에서의 모든 시험 및 인증을 책임지는 CENELEC의 산하 기구이다. CEN/CENELEC 인증연락위원회는 CEN 인증위원회와 ELSECOM간의 전반적인 업무조정을 담당한다.

동 규정은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인 CEN/CENELEC 단원 (Section 1)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 마크제도의 기본원칙 및 그 필수요건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즉 제조된 제품이 유럽규격에 적합하

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확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능력 및 악습을 규명하고 교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두개의 별개 단원들(Section 2A 및 2B)

현 규정의 시행에 대한 CEN 및 ELSECOM의 각각의 접근 방법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 접근 방법들은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제도상의 필수적 요소는 공통적인 것이다.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 마크제도 규정은 제1부 및 제2부 A장에서는 CEN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제1부 및 제2부 B장에서는 ELSECOM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1부의 내용은 제2부 A장 및 제2부 B장의 내용에 우선한다.

제1부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의 기본원칙

1-1. 적용범위

1-1-1. 현 제도의 틀 안에서는 CEN/CENELEC 유럽마크는 CEN/CENELEC 유럽마크를 사용코자 하는 인증제도 및 제품의 분야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고객은 이 마크를 통해 자신의 제품이 관련 유럽규격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으며, 아울러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규정에 기술된 적합성평가제도 및 마크의 사용에 관한 규정들을 이해할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증제도들을 이하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 라 칭한다.

1-1-2. CEN/CENELEC 유럽마크는 관련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

제도의 규정에 기술된 기술적 절차를 만족시켜야 사용이 허가되며, 그 대상은 제품의 부합성평가시험, 관련제도 라인에 대한 제조자의 품질시스템 평가, 제조현장검사 및 시장 사후관리가 포함된다.

1-1-3. 이 유럽마크의 도입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특정한 제품 분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합의된 마크들은 만일 관련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원활 경우 계속 존재할 수도 있다.

2 CEN/CENELEC 유럽마크

2-1. 마크의 의미

CEN/CENELEC 유럽마크는 제삼자 인증마크로서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이 CEN/CENELEC 내규 제2부(즉 EN 및 HD) 제1-1-1에 규정된 관련 CEN/CENELEC 규격의 요건들에 적합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마크는 시장에 제품을 소개할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에 등록된다.

* EN: 유럽 규격(European Standard)
/ HD: 조화 문서(Harmonization Document)

2-2. 마크의 소유권

인증 상표는 다음 기관들의 공유 자산이다.

▲CEN(유럽표준화위원회):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는 36 rue de Stassart, 1050 Brussels, Belgium이다.

▲CENELEC(유럽전기기술표준화 위원회):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는 35 rue de Stassart, 1050 Brussels, Belgium이다.

2-3. 유럽마크 인증제도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는 제조자에게 특정한 제품군의 범위 내에서 그의 제품에 CEN/CENELEC 유럽마크를 사용토록 허가해주는 절차를 수행하는 세부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본 CEN/CENELEC 내규 제4권에 수록된 규정에 의거하여 각 제도별로 제정된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의 규칙들은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의 규칙들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수단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CEN/CENELEC 유럽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허가권은 CEN인증위원회 또는 ELSECOM으로부터 각기 개별적으로 문서화된 결정을 통해 주어진다. 이에 대한 조정은 CEN/CENELEC 인증연락위원회(5-2. 참조)에 의해 행해진다.

2-4. 유럽마크 인증서

제품이 관련 유럽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 규정에 기술된 기술적 절차를 만족스럽게 완료한 이후 유럽마크 인증인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의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제조자에게 전달된다.

만일 제품이 상이한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들에 따른 한개 이상의 CEN/CENELEC 규격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면, 그 중서는 모든 관련 요건들에 대해 유효하다.

이러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5. 마크의 보호

마크의 사용권리는 현재의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정 및 관련된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칙들에 의거한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발생하는데, 중서의 소지자는 계약에 의해 관련 조건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현재의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정에 의해 마크 부착 인증서를 획득한 제조사만 동 마크를 사용할 자격을 갖는다.

현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규정의 위반 또는 관련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규칙의 위반시에는 44조에 기술된 조치에 의거한 마크 사용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2-6. 마크

CEN/CENELEC 유럽마크의 디자인은 부록에 기술되어 있다.

이 마크는 원칙적으로 제품 자체에 부착도록 되어있다. 만일 제품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이 마크를 제품의 포장, 라벨, 사용설명서 또는 부속첨부 상업용 문서에 부착할 수도 있다.

어떤 크기의 마크라도 사용하거나 재생산될 수 있으며 부록에 기술된 작성비율이 준수되어야 한다.

마크에는 그 마크의 사용을 허가한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임받은 기관을 나타내는 인식부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인식제도와 관련한 행정적 사항은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규정 중 CEN 또는 ELSECOM 관련조항을 보면 나와 있으며, 아울러 CEN/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에도 기술되어 있다.

2-7. 기타 마크들

CEN/CENELEC 유럽마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국가인증제도에 의한 시장적 가치를 고려하여,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시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련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에 규정된 특정한 조건에 따라 제조자는 전환기간 동안에 한해 CEN/CENELEC 유럽마크가 인증한 것과 동일한 기술사항에 대하여 인증된 다른 마크를 추가로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국가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과 CEN/CENELEC 유럽마크를 채택할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시장(market)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 전환 조치는 5년 이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2-8. 마크 사용 유효기간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에는 관련 규격이 개정될 경우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 개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크의 사용 유효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간의 제한은 인증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CEN/CENELEC 유럽마크의 사용권리는 제조사가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에 의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인증서를 소지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다.

3.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의 규칙 및 요건

3-1.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의 요건

어떤 제품에 적용된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은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의 규칙들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각 개별 인증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이며, 그 시행을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들의 기술적인 조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는 ISO/IEC GUIDE 28-제품에 대한 시범적 제삼자인증제도에 관한 총괄규칙-에 기술된 ISO/IEC 제삼자인증제도 제5호에 일치하는 적합성평가를 포괄한다.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에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3-1-1.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CEN/CENELEC 회원국 또는 CEN/CENELEC 산하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영토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3-1-2. 제품이 CEN/CENELEC 규격의 요건들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려면 제삼자의 시험소에 의해 수행되는 형식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1-3. 제조자는 유럽마크가 인가된 제품의 생산공정을 포괄하고 아울러 최소한 EN-ISO 9002규격 이상인 수준을 가진 규격에 의거한 품질시스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전화낙간에 한해 적용되

는데, 그 기간은 CEN/CENELEC 유럽 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에 명시되며 최대 3년이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에 있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품질시스템 인정기관이 발급한 타 인증서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1-4. 권한 위임 기간에 의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예를 들어 제조공정 및 시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 만일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에 3-1-3에 의거한 전환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은 관련 품질시스템이 적용되기 전까지 공장검사 회수를 늘릴 수 있다.

3-1-5. 인증, 시험 및 검사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EN 45000 시리즈 규칙들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아울러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3-2. 참조)에 규정된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의 시행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들은 3-4에 규정된 대로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행정적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의 규칙들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3-2-1. 제목 및 CEN인증위원회 또는 ELSECOM의 승인 일자

3-2-2. 다음을 포함하는 적용범위에 대한 정의

▲동 제도에 의거한 제품

▲관련 CEN/CENELEC 규격 목록

3-2-3. 동 제도에 관련된 인증, 시험 및 검사에 종사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 및 평가절차

3-2-4. 제조사의 신청서 내용 세부 명세서(즉 제품관련 설계, 제조 명세서, 제조사가 속한 기관, 시험설비, 교정 등을 포함한 사내 품질평가 및 관리시스템 등)

3-2-5. 다음의 요건들

▲마크 사용 인증서의 발급을 목적으로 한 형식시험 시료의 선택 및 제출

▲제출 현장에 대한 최초 평가

▲제조 현장에 대한 최초 평가

▲사후관리(예를 들어 검사 및 정기 시험의 정상적인 주기, 수행된 시험 및 사후관리의 성격). 이 부문에는 정상적인 인증서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사의 책임하에 있는 관련 제조공정의 품질시스템.

이 부문에는 전환기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2-6. CEN/CENELEC 유럽마크의 제품 표시요건

3-2-7. ‘감독하의 제조사의 시험’ 또는 ‘제조사의 작업장에서의 시험’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아울러 그러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3-2-8.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3-1-5에 규정된 기관들의 목록(Annex 1)

3-2-9. 마크 사용 권리와 수수료(안) 및 행정적 신청료. 여기에는 CEN/CENELEC 인증위원회 및 ELSECOM의 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Annex 2)

3-3. 특별국가조건 또는 A-변이를 관장하는 규정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은 아울러 관련된 인증제도들이 어떻게 특별국가조건 및 A-변이를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적용된 CEN/CENELEC 규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규정들은 마크를 인가할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들에 최소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토록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당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채택할 수 있는 유럽 국가의 목록을 인증서에 명시할 것.

▲마크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사에게 관련이 있는 특별한 국가적 조건 및 A-변이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소비자나 사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이나 포장에 “…(국가의 목록)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부착토록 권고할 것.

3-4. CEN/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의 관리행정

CEN인증위원회 및 ELSECOM은 CEN/CENELEC 유럽 마크인증제도의 시행을 위임받은 기관들의 활동과 관련한 행정 및 그 마크의 관리행정에 대하여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4-1.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권한위임 기관들이 관련 인증제도의 현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EN 45000시리즈 규격에 의한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제도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검사

3-4-2.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권한위임 기관들이 EN 45000 시리즈 규격에 의한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장

3-4-3. 마크 사용 인가원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취급하는 규칙의 유지 및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권한위임 기관들의 총 합성 및 기술력 능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4-4.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틀 안에서 적용되는 CEN/CENELEC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용가능케 하는 것.

4. 제조자

4-1. CEN/CENELEC 유럽마크를 사용코자 신청한 제조자는 관련된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권한위임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권한위임기관은 해당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운용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시험검사절차 및 수수료가 포함된다.

4-2.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서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조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인증수수료에 동의하여야 한다.

▲CEN/CENELEC 유럽마크(인가될 경우)의 사용권리에 대한 수수료: 연례적으로 납부 가능한 이 수수료의 등급은 각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별로 CEN/CENELEC

인증위원회가 결정하든지 또는 각 ELSECOM이 결정한다.

▲행정 수수료: 이 수수료는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신청 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수수료이다.

▲시험 및 검사수수료: 이 수수료는 최초 신청서의 처리 수수료 및 해당되는 경우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이다.

4-3.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서를 받는 경우, 제조자는 그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에 대하여 CEN/CENELEC 유럽마크를 사용할 권리인 가받는 것이다. 그 인증서 및 해당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에 의거한 마크 사용 따른 의무는 인증서의 수혜자에 있다.

제조자는 CEN/CENELEC 유럽마크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 및 선전문서에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록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조자는 인증된 제품 및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구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다른 형식 및 유형의 제품에 추가로 CEN/CENELEC 유럽마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제조자는 관련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CEN/CENELEC 유럽마크가 인가된 제품과 관련한 규격의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및 제조공정상의 수정에 대하여 권한위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권한위임기관은 이러한 통보를 접수할 경우 그 수정사항이 발급된 인증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그 인증서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권한위임기관은 특별시험 및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제조자는 권한위임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에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4-4. 불만처리

인증된 제품의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품의 관련규격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모든 불만의 기록을 보존하고, 권한위임기관이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요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불만 및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취한 조치들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 마크제도의 규정 및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을 제조자가 준수하지 못한 경우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는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에 규정된 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 기간 내에 제조자에게 정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특정한 기간 동안 마크 사용권리 정지

▲마크 사용권을 회수

4-5. 이의 제기 절차

4-5-1. 권한위임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

제조자는 자신이 신청한 CEN/CENELEC 유럽마크의 인가에 책임이 있는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 제도의 권한위임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당해 기관은 이를 위하여 EN 45000에 규정된 대로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의제기는 제조사에 대해 내려진 효력을 중지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권한위임기관이 수행했거나 그 책임하에 이루어진 이중절차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모든 이의제기는 관련 결정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기관에 문서로써 제출된다. 관련기관은 이의제기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4-5-2. CEN인증위원회/ ELSECOM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권한위임기관이 이의제기를 거

부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의제기 내용이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의 원칙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것일 경우.

이 경우 이의제기는 제조사에게 취해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는다. 이의제기는 논쟁 대상인 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후 1개월 이내에 등록된 공한에 의해 CEN 또는 CENELEC의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5. CEN 인증위원회 · ELSECOM

5-1. 의무

CEN과 CENELEC에는 각기 CEN 인증위원회 및 ELSECOM 유럽마크 인증제도 및 CEN/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에 대하여 각기 해당된 분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5-1-1. 정책 및 관리 문제

5-1-2.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개발 및 감시

5-1-3.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운영 및 활용촉진

5-1-4.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제정 검토

5-1-5. 마크의 부정한 사용에 대응한 마크의 보호

5-1-6. 마크가 인가된 제품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등록기관이 유지됨을 보장

5-1-7. 상호 사후관리 및 결과의 교환에 대한 감시

5-1-8. 제품 분류별로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통계수치의 활용

5-1-9. 사후관리 활동 및 결과에 대한 통계수치의 활용

5-1-10. 마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을 독려

5-1-11. 마크의 사용 권리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모든 재정적 문제의 관리

5-1-12. 이의제기의 처리

5-2. CEN/CENELEC 인증연락위원회

CEN인증위원회와 ELSECOM간의 전반적인 업무조정은 CEN/CENELEC 인증연락위원회가 담당하며, 이 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CEN/CENELEC의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모든 상의한 의견을 조정하며, 해결방안을 CEN인증위원회 및 ELSECOM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ko]**

CEN/CENELEC 유럽마크의 디자인

이 마크는 옆에 서술한 색으로 재생산될 수 있으며, 배경에 대하여 흑백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마크는 또한 관련제품의 몸체에 인한, 압인 또는 인쇄될 수 있다.

이 마크는 눈금 위에 그려진 비율이 준수된다면, 마크가 명확히 보일 수 있고 식별코드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우, 어떤 크기로든지 재생산될 수 있다.

마크의 재생산 방법에 따라 선명성 및 판독성을 보장하며 마크의 크기를 최소화할 경우에도 마크의 A의 크기는 3mm보다 커야 한다.

저작권 © 1994 CEN/CENELEC
모든 권리 보유
동 마크는 CEN/CENELEC의
승인없이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재생산 또는 배포될 수 없음.

